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1
------	------

2017. 8. 3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과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중인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감채기금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중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공사·공단 공채 상환을 위한 지원 등의 용도로 활용됨.
- 2017년 운용규모는 지난 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포함해 약 7,227억 1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3,390억원을 도시철도공채 상환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시금고 예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2017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변경(A)	당초(B)	증감(A-B)	항목	변경(A)	당초(B)	증감(A-B)		
합 계	722,701	309,801	412,900	합 계	722,701	309,801	412,900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412,900	-	412,9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원금	205,300	205,300	-
	기타 전입금	4,730	4,730	-		이자	4,730	4,730	-
공공예금 이자수입	14	14	-	기타지출	339,000	99,000	240,000		
				기금관리비	50	50	-		
예치금회수	305,057	305,057	-	예치금	173,621	721	172,900		

〈감채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획)	비 고	
수 입	603	358	1,246	175	4,719	7,227		
이자수입	9	5	2	3	1	0.1	예금 이자수입	
일반/순세계잉여금전입금	352	102	1,152	81	4,624	4,176	순세계잉여금 등	
재투기금 차입금	-	-	-	-	-	-		
예치금 회수	242	251	92	91	94	3,051	전년도 이월금	
지 출	603	358	1,246	175	4,719	7,227		
일반운영비	0.2	0.2	0.2	0.2	0.2	0.5	신용평가수수료 등	
지하철건설채무상환	-	-	-	-	-	-	지하철건설채무원리금 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	-	-	-	-	3,39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 회계 전출(도시철도공채 상환) 등	
지방채 상환	원 금	-	-	-	-	88	-	서울시 지방채 원금 상환
	이 자	-	164	4	-	-	-	서울시 지방채 이자 상환
예수금	원 금	-	-	1,060	-	1,500	2,053	재투차입금 원금 상환
	이 자	352	102	91	81	81	47	재투차입금 이자 상환
예치금	251	92	91	94	3,050	1,736	다음년도이월금	

-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주요 재원이며,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이 큰폭으로 증가해 이를 통해 도시철도공채 상환과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활용한 바 있음.

다. 기금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초과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감채기금은 서울시의 각종 부채와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지원을 포함한 채무감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설치되었으며, 지하철 양공사 건설부채 등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등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감채기금은 설치 이후 지하철 건설부채 총 3조 7,110억원, 지방채 4

조 501억원 등 각종 부채 상환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해 왔음.

〈감채기금의 각종 부채 상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지하철 건설채무	37,110	-	-	971	5,105	5,471	8,761	6,902	8,283	975	642	-	-	-	-	-	
지방 채 상 환	계	40,501	8,223	13,525	4,007	713	656	992	419	515	5,080	6,115	-	164	4	-	88
	원 금	27,855	5,557	7,149	3,270	422	357	728	161	214	4,412	5,487	-	-	-	-	88
	이 자	12,646	2,666	6,376	737	291	289	264	258	301	668	628	-	164	4	-	-

- 특히, 서울시에는 2016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3조 4,769억 7천 5백만원의 서울시 채무를 포함해 12조원 이상의 각종 채무상환 의무가 남아 있어 감채기금의 설치목적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서울시에는 지방채의 상환재원 적립이나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의 중복성도 크지 않다고 평가됨.
- 아울러, 조례에 따라 감채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이 부동산 거래량과 같은 경기변동에 따라 큰 유동성을 보이는 점을 감

안할 때 중장기적인 재원 조성 필요성도 인정됨.

- 판단컨대 감채기금의 설치목적과 그 동안의 운용실적, 향후 서울시의 부채상환 규모는 물론이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기금의 예상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해야 하며, 기금의 존속이 결정될 경우에도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와 자금운용 합리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u> <u>일까지로 한다.</u> 다만, 존속 기한 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 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 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2년 12월 31</u> <u>일</u> ----- ----- ----- ----- -----.